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0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안 제44조의7 제3항 단서 신설)	2
※참고: 부처별 수정의견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2.

다.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해 유통 금지를 넘어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열람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3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안 제44조의7 제3항 단서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해야 하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함(안 제44조의7 제3항 단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	③ ----- ----- ----- ----- ----- ----- ----- - 다만, 제1항제8호의 정보에

현행	개정안
<u>설></u> 1. ~ 3. (생략) ④ · ⑤ (생략)	<u>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판단되는 북한 관련 사이트 및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열람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현재 북한 관련 정보는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해 열람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최근 들어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되어 열람 절차가 간편해졌음.
- 한편,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단순한 접근 또는 열람만을 허용한 경우에는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북한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국민이 정부가 허용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받는 경우 오히려 편향되거나 왜곡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고 각종 우회 경로를 통해 일부 북한 관련 정보가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정보 접근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 형성 및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도 인정됨.
- 아울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북한 고무·찬양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이 단순히 북한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열람·접근하는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법체계상 다른 조문과 충돌·모순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에 따라 북한 관련 사이트 및 게재 정보의 접근·열람이 허용되더라도 여전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고 있어 각 조문의 취지와 내용이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음¹⁾.
- 또한, 특정 정보를 정보통신망 내에서 유통하는 것과 단순 접근·열람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정보의 내용과 무관하게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규제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은 정보에 대한 단순 접근·열람이라는 정보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의 내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당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일반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보 습득 및 이해도 제고를 돕는 것이라면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정치적 선동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면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어야할 것임.

- 참고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²⁾과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³⁾은 북한자료 중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을 특수자료로 하고 그 외의 자료를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차등하기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들의 심사 경과를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방이 가능한 북한 자료의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단순 접근·열람’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단순 북한 관련 사이트’가 아닌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2) 의안번호 제2211865호,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3) 의안번호 제2214341호,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마땅히 유통이 금지되어야 하는 불법정보'로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통일부는 국정과제⁴⁾ 이행을 위해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 중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근·열람 허용은 단순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이트 접속 차단 규제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접근·열람 허용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법적·기술적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의 내용이 다양한 점을 고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또는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일반자료로 분류된 북한정보 수록 사이트에 한해 허용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고,

‘단순 접근·열람 허용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경찰청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되는 행위 전체에 대해 자유로운

4) 117-4.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게시가 허용되어 각종 불법정보도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 일괄적으로 방미통위의 명령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사안을 검토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

※참고: 부처별 수정의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신중검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로서, ‘단순 북한 관련 사이트’가 아닌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땅히 유통이 금지되어야 하는 불법정보’로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일반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을 통한 이해도 제고 및 국가 차원에서의 북한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과 관련하여,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 의견 조회 결과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제1항제8호의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제1항제8호의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동 발의안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에 공감 * (국정과제) 117-4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지시사항) 북한자료 접근성 확대(12.19.) ○ 남북간 군사·경제력 격차 및 우리 사회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려할 때, 접속 차단 해제는 체제 자신감에 기반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 - 이는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제고에 기여하고, 건전한 공론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대북·통일 인식 및 정책 참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사이트에 대한 접근·열람 허용은 단순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접속 차단 규제의 해제를 의미하나, - 동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접근·열람 허용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법적·기술적 부담을 지우는 것과 같이 보여지므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안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함.

국가정보원 의견 조희 결과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다 만, 제1항제8호의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다만 제1항제8호의 정보 중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또는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일반자료로 분류된 북한자료에 해당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는 개정안의 입법대상인 ‘북한 운영 사이트’에 한정되지 않는 바, ‘북한 운영 사이트’에 대해서만 개정안이 예외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 필요 ○ 또한 북한 운영 사이트의 콘텐츠 내용이 매체별로 다양한 점을 고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안) 또는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안)에 따라 일반자료로 분류된 북한정보 수록 사이트에 한해 접근·열람을 허용토록 연계, 각 법안간 일관성 유지 필요 ○ 한편, ‘단순 접근·열람 허용 조치’의 문언상 의미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안 또는 시행령 등에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의견

경찰청 의견 조희 결과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u>다만, 제1항제8호의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 44 조 의 7 (불 법 정 보 의 유통 금지 등) ① · ② (생 략) 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다만</u> <u>제1항제8호의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u>	○ 정보접근권 허용범위는 입법적 결단사안이며, 국민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 사이트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개정안대로 시행 시 북한 사이트뿐만 아니라 8호에 의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되는 행위’ 전체에 대해 자유로운 게시가 허용되어, 북한 사이트 개방이라는 당초 법개정 취지를 벗어나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북한 체제 선전·선동을 위해 제작된 각종 불법정보들도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아울러, 「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 체제를 선전·선동하기 위해 글을 반복 게시한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 판결 및 처벌을 받은 자가 게시한 글이라 하더라도 게시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했을 때에는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공백 상황 발생 가능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방미통위의 명령권을 제한하는 것보

		다는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사안을 검토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제외할 수 있다”)으로 규정 필요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⑤...(중략)... 문서·도화 <u>기타의 표현물</u>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u>반포</u>·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u>기타의 표현물</u>'을 '<u>반포</u>'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2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사이트에서 찾은 북한 체제 찬양,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글들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 게시한 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실형 선고(2020고단1669 판결)
--	--	--